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6. 6. 7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p>	<p>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</p>	<p>약관명 변경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17. “단말기 지정 및 이용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<u>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(이하 “단말기”라 한다)의 IP,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17. “단말기 지정 및 이용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<u>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(이하 “단말기”라 합니다)의 IP,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호 내용 변경 (공인인증서 필수 사용내용 삭제, 본인확인 내용 추가)</p>
<p>제5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</p> <p>② 1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<u>공인전자서명(이하 “공인전자서명”이라 한다)이</u> 있는 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얻은 경우</p>	<p>제5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</p> <p>② 1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<u>공인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</u> 있는 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얻은 경우</p>	<p>호 내용 변경 (동의방법에 기타 전자서명 추가)</p>
<p>제7조(공인인증서 사용)</p> <p>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본인계좌에 대한 조회업무</p> <p>2. ARS(자동응답서비스), 자동 입?출금기,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</p>	<p>제7조(<u>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</u>)</p> <p><u>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, 성격,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조 제목 및 내용 변경 (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단서조항 내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 문구에 맞춰 변경)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경우</p> <p>3. <u>등록금,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</u></p> <p>경우</p> <p>4. <u>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 이체</u></p> <p>5. <u>전자화폐,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6. <u>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2조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</p> <p>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에</u>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.</p> <p>제13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</p> <p>① 1.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<u>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</u>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 <p>제14조(거래의 제한)</p> <p>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.</p> <p>5. <u>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 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</u></p>	<p>제12조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</p> <p>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.</p> <p>제13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</p> <p>① 1.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 <p>제14조(거래의 제한)</p> <p>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5.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된 미지정계좌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 이체</p>	<p>항 내용 변경 (약관명)</p> <p>호 내용 변경 (동의방법에 기타 전자서명 추가)</p> <p>호 내용 변경 (미지정계좌로의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6.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.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라. <u>전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</u></p>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</p> <p>2.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</p> <p>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<u>공인인증서 재발급·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</u>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③ 은행은 <u>제2항의</u>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</p> <p>제21조(거래기록·자료의 제공)</p> <p>①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</p>	<p>거래지시를 할 때</p> <p>6.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,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라. <u>전자보안카드 또는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</u></p>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</p> <p>2.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</p> <p><u>3.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인증하는 경우, 인증 재등록 후 누적하여 연속으로 은행이 정한 횟수만큼 일치하지 않을 때</u></p> <p>④ <u>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·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을 통한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 (서면 등의 포함)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</u></p> <p>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③ 은행은 <u>제1항의</u>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</p> <p>제21조(거래기록·자료의 제공)</p> <p>①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</p>	<p>이체 관련 내용 추가)</p> <p>목 내용 변경 (전자금융사기예방 가이드 반영)</p> <p>호 신설 (생체인증 오류 시 제한 가능 추가)</p> <p>항 내용 변경 (은행이 정한 인증방법 추가)</p> <p>항 내용 변경 (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임)</p> <p>제공시기 표시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·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·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</p> <p>제28조(약관의 변경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.</p> <p>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. 다만 기존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회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9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p> <p>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「전자금융거래법」등 관계법령,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/기업용)을</p>	<p>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·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·자료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</p> <p>제28조(약관의 변경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p> <p>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29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p> <p>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「전자금융거래법」등 관계법령,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/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</p>	<p>항 내용 변경 (용어 변경: 회원=>이용자)</p> <p>항 내용 변경 (약관명)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적용한다.</p> 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4 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5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(삭제)</p>	<p>부칙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